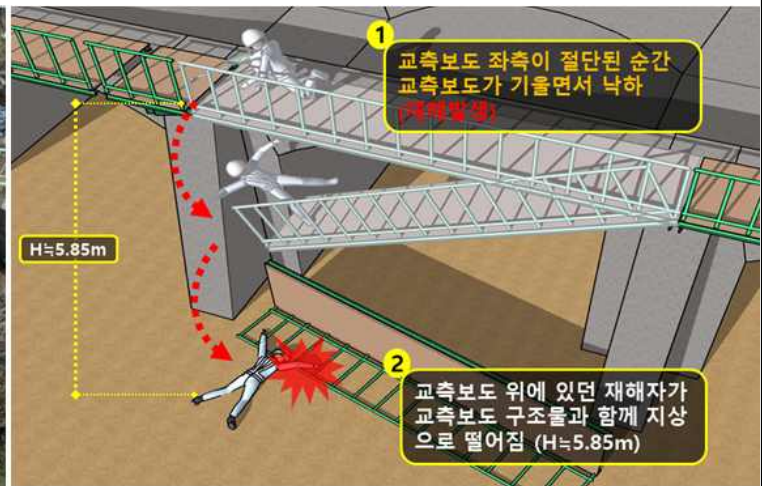




재해 개요

- 2022. 11. 28.(월) 13:11경, 충북 □□시 △△읍 소재 「○○○○」 공사 현장에서, ○○ 소속 피해자가 교측보도의 산소절단 작업 중 절단된 보도 구조물과 함께 지상으로 떨어져(H ≒ 5.85 m) 병원으로 이송되어 치료받던 중 2022. 12. 3.(토)에 사망한 재해임



재해 발생 원인

- 교측보도 철거작업에 대한 작업계획 수립·이행 미흡**
 - 교측보도 철거(절단·분절)작업을 수행하면서 당초 시공계획 상 계획된 작업방법(고소작업대 이용)을 준수하지 않았으며, 작업방법에 변경사항이 발생하였음에도 이를 반영하여 작업계획을 재수립하지 않음
- 고소작업 장소 내 안전대 부착설비 설치 미흡**
 - 작업 중 철거대상 구조물이 낙하하는 경우를 고려하지 않고 안전대 부착설비를 설치함에 따라 근로자의 안전대 사용이 재해예방으로 이어지지 못함



재해 예방 대책

- 교측보도 철거 시 사전 작업계획 수립·이행 철저**
 - 교량 구조물의 철거작업은 작업 방법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재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각 작업 순서(절차) 단계별 주요 유해·위험요인을 파악한 후 그에 따른 예방대책을 수립해야 하며, 최초 작업계획에 변경사항에 발생한 경우 이를 반영한 작업계획을 재수립하고 해당 작업 근로자들에게 충분히 주지(교육)시켜야 함
- 안전대 부착설비 설치**
 - 근로자가 구조물의 전도·낙하의 위험성을 동반하고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수행할 경우, 해당 구조물의 전도·낙하 등이 발생하더라도 근로자의 떨어짐을 방지할 수 있는 장소(위치)를 선정하여 안전대 부착설비를 견고하게(처지거나 풀리지 않도록) 설치하여야 함

※ 본 사례는 공공기관 발주공사·직영·도급 등 현장에서 발생한 사망사고에 대하여 안전보건공단에서 동종사고의 재발방지를 위해 배포하고 있습니다.